

	<h2>ESG봉사센터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3-58
		제정일자	2026.03.01.
		개정일자	-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의 ESG 경영 가치를 실현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ESG 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ESG(환경·사회·거버넌스) 기반 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2. 인성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 취득 지원
3. 인성 교육 및 봉사 실무 관련 전문가 양성 업무
4.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
5. 학생 및 교직원 봉사단 관리 및 실적 인증
6. 센터 사업 성과 분석 및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 구축

### 제 2 장 조직 및 위원회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 직원, 연구원, 조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센터 운영의 주요 사항 심의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
1. ESG 봉사센터 운영위원회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)
2. 센터자체평가위원회 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)

②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지역협력위원회 등 전문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으며,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### 제3장 위원회별 기능

제5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 기본 계획 및 연간 사회공헌 사업 계획 수립
2. 인성지도사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3. 주요 봉사 프로그램의 선정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4.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
제6조(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)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센터 핵심성과지표(KPI) 설정 및 평가 기준 수립
2. 인성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교육 효과성 평가
3. 연간 봉사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ESG 가치 실현 적합성 평가
4. 평가 결과의 차년도 사업 반영(환류) 확인

## 제 4 장 운영 및 행정

제7조(회의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전문성 강화) 센터장은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